**제1장 총 칙**

**제1조 이사회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유라클(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회 적용 범위**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관리 감독한다.

**제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 상무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5조 이사회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하며, 이 경우 의장은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른 이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구도로 통지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

**제9조 이사회 부의 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 의안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지정 다. 주주 제안에 대한 심의 및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라. 영업보고서의 승인 마. 재무제표의 승인 바. 정관의 변경 사. 자본의 감소 아.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자.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차.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카.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파. 현금, 주식, 현물 배당 결정 하.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거. 이사의 보수 너. 주식의 소각 더.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러.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머. 법정준비금의 감액 버. 기타 주주총회에의 부의할 의안 |
| 2.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공동대표의 결정 다.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라.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이 선임 및 해임 마.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바.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사.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아. 간이 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자. 분할, 분할합병, 흡수합병 및 신설 합병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차. 분기 배당의 결정 카.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 업무의 범위 타.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의 １００분의 ２.５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해외직접투자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다. 신주의 발행 라.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마. 준비금의 자본전입 바.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사.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아. 자기자본의 １００분의 ５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규 차입 자. 자기자본의 １００분의 ２.５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차.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카. 자기주식의 소각 |
| 4. 기 타  가. 주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나.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다. 이사의 업무 위촉 및 해촉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사.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집행한다.
2.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①항에 따른 이사회 부의 사항 중 일부를 제 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의 권한위임**

1.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 임원에게 당해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를 대표할 자의 선정,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결의 방법 등**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회 개최 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출석**

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실무주관부서(간사)**

1. 이사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 단위의 이사회 지원조직(간사)을 둔다
2. 지원조직(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 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보존을 포함한 이사회와 사외이사, 감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